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1064
----------	------

제출년월일 : 2002.

제출자 : 안산시장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시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정함 ..... (안 제2조)
- 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 ..... (안 제3조)
- 다.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정함 ..... (안 제10조, 제11조)
- 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함 ..... (안 제14조, 제15조의 별표)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2. 7. 11 ~ 7. 31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지방자치단체조례 표준안 (경기도)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이 경우 영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7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영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 광고물 관리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위원장은 포함한다)의 수가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소위원에서 심의하도록 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옥상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이거나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으로서 주거지역과 연접되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5미터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지면으로부터 총 높이 4미터이상이거나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으로서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높이가 건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및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시장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위탁기간·임무·선정방법 및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게시시설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현수막지정게시대나 벽보지정게시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게시시설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시장은 법 제3조·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된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위반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무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광고업자, 종사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제12조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장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 업무 및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건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문종화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경관담당 조주형
	담당자 성명·전화	조영일 (행정 2354)

【별표 1】

## 옥외광고업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 (제11조 관련)

종 류	교 육 시 간	교 육내 용	교 육대 상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li> <li>•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li> <li>*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 는 경우에는 광 고업 신고후 최 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li> </ul>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 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옥외 광고업자</li> </ul>	
보수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업자(대표자)</li> <li>*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li> </ul>
기타교육	별도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li> </ul>		

【별표 2】

옥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13조 관련)

##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비고
1. 가로형 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 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제곱미터 이하</li> <li>•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li> <li>• 20제곱미터 이하</li> <li>•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li> </ul>	3,0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 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제곱미터 이하</li> <li>•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li> </ul>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제곱미터 이하</li> <li>•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li> <li>•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li> </ul>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li> <li>• 지주이용간판과 같음</li> </ul>		
5. 옥상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하</li> <li>•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li> </ul>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하</li> <li>•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li> </ul>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간판에 준함</li> <li>• 지주이용간판에 준함</li> </ul>	15,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비고
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제곱미터 이하</li> <li>•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0</li> <li>1,000</li> </ul>	
나. 전주·가로등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이하</li> <li>•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00</li> <li>2,000</li> </ul>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제곱미터 이하</li> <li>• 5제곱미터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000</li> <li>10,000</li> </ul>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대		10,000	
다. 차량 양측면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하</li> <li>•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0</li> <li>1,000</li> </ul>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하</li> <li>•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00</li> <li>1,500</li> </ul>	
15. 벽보	매	• 50매당	3,000	
16. 전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 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비고
1. 시내·시외·전세 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 부스이용 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제곱미터 이하</li> <li>• 1제곱미터 초과시</li> </ul>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하</li> <li>• 10제곱미터 초과시</li> </ul>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홍보탑광고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제곱미터 이하</li> <li>• 20제곱미터 초과시</li> </ul>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이하</li> <li>•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li> </ul>	4,000 2,000	

##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 광고물등의 규격, 위치, 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 적용
-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 【별표 3】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이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용 기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21,000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38,000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14,000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600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14,000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20,000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800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14,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20,000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800
5. 영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11,000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에 준함.	

## 【별표 4】

##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제13조 관련)

( 단위 : 원 )

구 분	단 위	수 수 료	관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별표 5】

## 과태료 부과기준 (제14조제1항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비고
1. 법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한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8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19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39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45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2) 그 밖의 지역, 장소에 설치한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5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7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9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15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29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비 고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9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5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19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2) 지주.지정개시대 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9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5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19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9만원	

위반사항	과태료	비고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12만원 15만원 18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25만원 35만원 4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0천원 장당 15천원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5천원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 이상	장당 15천원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나. 연2회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별표 6】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비고
1. 가로형간판,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비 고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110만원	
- 12.1~14.0제곱미터 이하	130만원	
- 14.1~16.0제곱미터 이하	150만원	
- 16.1~18.0제곱미터 이하	170만원	
- 18.1~20.0제곱미터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3.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0.6~1.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48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3.6~4.0제곱미터 이하	65만원	
- 4.1~4.5제곱미터 이하	85만원	
- 4.6~5.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110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130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150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170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비 고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2.1~3.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3.1~4.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48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65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85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110만원	
- 12.1~14.0제곱미터 이하	130만원	
- 14.1~16.0제곱미터 이하	150만원	
- 16.1~18.0제곱미터 이하	170만원	
- 18.1~20.0제곱미터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210만원	
- 21.1~30.0제곱미터 이하	230만원	
- 30.1~35.0제곱미터 이하	245만원	
- 35.1~40.0제곱미터 이하	260만원	
- 40.1~45.0제곱미터 이하	280만원	
- 45.1~50.0제곱미터 미만	290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50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비 고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70만원에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하되 100만원이하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 (공) 1개	40만원	
- 애드벌룬 (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 (공) 3개이상	80만원에 1개당 5만원을 가산하되 100만원 이하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 안내탑. 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하되 100만원 이하	
나. 교통안내소	· 가로형간판에 준함	
다. 안내게시판. 지정벽보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관광안내도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의시설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비고
마. 가로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에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하되 50만원 미만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50만원 150만원에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하되 500만원 이하	
(1) 유인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200만원 200만원에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하되 500만원 이하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10만원 20만원 29만원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45만원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 간판에 준함.	

#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064
------------	------

제안년월일 : 2002. 9.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안산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안산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 최초 구성 위원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함.

## 2. 주 요 골 자

- 안 제3조 제1항 중 “9인 이내”를 “5인 이상 9인 이내”로 동조 제3항2호 중 “5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수정함.
- 안 제12조 제3항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함.

##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9인 이내”를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2호 중 “5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3년”를 “2년”으로 한다.

## 조문대비표